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0
----------	------

2018. 6.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4. 12 이숙자 의원

나. 회부일자 : 2018. 4.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6.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이숙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12.29.) 및 시행(2018.4.19.)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 등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51조)
-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세분하여 관리(안 제8조의 3, 안 제47조~제49조)

3.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¹⁾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령”)²⁾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숙자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용도지구와 관련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여 세분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³⁾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이는 토지이용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고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하여 세분하는 한편, 시설보호지구 중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되, 건축제한은 기존 용도지구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임.

1)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

2)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12.29., 공포, 2018. 4. 19. 시행

3)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9호)

〈이 개정조례안 관련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구 법	개정전 시행령	현행 법·시행령	조례 세분	건축제한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유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유지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유지	

〈그 외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

舊 법	舊 시행령	조례	新 법·시행령	조례
미관지구	중심자일반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변경지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교육환경조성 등을 위해 특정용도를 제한하는 2개소(서울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3개소(여의도일대, 김포공항 일대, 양천구 신월동 군사시설)가 존재함⁴⁾.
- 한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법률 부칙⁵⁾에 따라

4) 서울시가 기시행한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16.4~'18.2)에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폐지를 검토하고,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을 제시하였음.

5) 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9.4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사항으로서, 323개소에 달하는 대상지 여건 검토와 건축행위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현재 '용도 지구 조정 용역('18.5월 착수)'과 연계하여 시장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80
----------	---------

제안일자 : 2018. 06. 1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공용시설 및 공항시설 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개정 규정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보고, 종전의 학교시설보호지구는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시행일을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부터 제49조, 제51조에 따른 다음표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지구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각각 세분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3.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표 왼쪽 칸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부터 제49조, 제51조에 따른 다음표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지구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각각 세분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중요시설물보호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공용시설보호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1. 공용시설보호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공항시설보호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2. 공항시설보호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중요시설물보존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3. 중요시설보호지구</td> </tr> </table> <p>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표 왼쪽 칸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p>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3.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3.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data-bbox="1034 315 1406 353"><u>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u></p> <table border="1" data-bbox="1043 376 1444 501"> <tr> <td data-bbox="1043 376 1251 432">종전의 시설보호지구</td> <td data-bbox="1251 376 1444 432">특정용도제한지구</td> </tr> <tr> <td data-bbox="1043 432 1251 501">1. 학교시설보호지구</td> <td data-bbox="1251 432 1444 501">1. 특정용도제한지구</td> </tr> </table>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4절 제목 중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

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의 제목 중 “공용시설”를 “중요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

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③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를 삭제하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교정시설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53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부터 제49조, 제51조에 따른 다음표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47조,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각각 세분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1. 공용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2. 공항시설보호지구
3.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중요시설보호지구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표 왼쪽 칸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표의 오른쪽 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4절〉 <u>시설보호지구</u>안에서의 건축 제한</p> <p>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u>학교시설보호지구</u>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15. (생략)</p>	<p>제8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u>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용시설보호지구</u>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u>공항시설보호지구</u>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u>중요시설보호지구</u>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p>〈제4절〉 <u>보호지구</u>-----</p> <p>제4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u>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u>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p>

현행	개정안
	<p><u>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④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p>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18. (생략)</p> <p>〈신 설〉</p>	<p><u>바에 따른다.</u></p> <p>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 ----- ----- ----.</p> <p>1. ~ 18.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태양에너지·연료 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p> <p>③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삭 제〉</p>
<p>제5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p>	<p>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p>

현 행	개 정 안
<p>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p>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④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p>	

현행	개정안
<p><u>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주유소는 제외한다)</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p> <p>가. 교정시설</p> <p>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p> <p>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79조·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6. (생략)</p> <p>7. <u>특정용도제한지구</u></p> <p>8. 삭제</p>	<p><u>28호의 장례식장</u></p> <p>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8. (현행과 같음)</p>